

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추연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138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3.

발의자 : 추연호 의원 외 15 명

1. 개정이유

- 주민자치위원회들의 연임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자치활성에 기여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,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과 고문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, 공석이나 해촉 등 결원으로 인해 선출되거나 위촉된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임기의 기산일부터 2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함. (제17조의2).
- 제17조의2에 따른 임기의 기산일은 2019년 7월 1일로 하며, 2년마다 갱신하여 적용 함 (제17조의3).
- 임기의 산정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제17조의4).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(제20조제1항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1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2

5. 관계법령 발췌서 등 : 붙임3

6. 예산수반사항 : 비용추계서 미첨부

7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8. 기타 참고사항 : 집행부검토의견서

【붙임 1】

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⑦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유로 해촉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.

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임기) ① 위원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석이나 해촉 등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 되거나 위촉된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임기의 기산일부터 2년 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.

제17조의3(임기의 기산일) 제17조의2에 따른 임기의 기산일은 2019년 7월1일로 하되, 2년마다 갱신하여 적용한다.

제17조의4(임기의 산정횟수) ①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에는 이를 연임의 산정 횟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7조의3에 따른 임기의 기산일이 최초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의 산정횟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”를 “때에는 그 임기 전이라도”로, “있으되,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”을 “있으며,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관할구역외”를 “관할구역 외”로, 같은 호 및 제2호 중 “경우”를 각각 “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

제20조제1항제4호 중 “하였을 경우”를 “한 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”를 “수행하기 어렵다고 동장이 판단된 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기애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위원장, 부위원장, 의원 및 고문의 임기는 2019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의원	추연호 대표발의 (행정 3570)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구성 등) ①~④ (생략)</p> <p>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, 해당 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실력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. 다만, 지방의원이 고문이 될 경우 관할구역은 선거구를 말한다.</p> <p>⑥ (생략)</p> <p>⑦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만료와 해촉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.</p> <p>⑧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17조(구성 등) 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----- ----- ----- -----. <단서 삭제>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해촉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.</p> <p>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의2(임기) ① 위원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장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석이나, 해촉 등 결원으로 인해 선출되거나 위촉된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임기의 기산일부터 2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.</p> <p>제17조의3(임기의 기산일) 제17조의2에 따른 임기의 기산일은 2019년 7월 1일로 하되, 2년마다 갱신하여 적용한다.</p>
<신 설>	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 <p>제20조(해촉)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되,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해당 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. 위원 및 고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. 자치센터의 운영취지, 목적,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.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<p>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<u>새로운 임기</u>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17조의4(임기의 산정횟수) ①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에는 이를 연임의 산정횟수에 가산하지 않는다.</p> <p>② 제17조의3에 따른 임기의 기산일이 최초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의 산정횟수에 가산하지 않는다.</p> <p>제20조(해촉) ① ----- -----에는 그 임기 전이라도----- -----있으며,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는-----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관할구역 외----- -----때 2. ----- -----때 3.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. ----- -----한 때 5. 그 밖에 ----- -----수행하기 어렵다고 동장이 판단된 때 <p><삭 제></p>